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보고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의안 번호	558
----------	-----

제출년월 : 2026년 2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과 조항 재배치 및 유사용어를 일관되게 수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신설을 반영하는 등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현황 : 99개 자치단체(광역6, 기초93) (별첨 1)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규약명, 안 제1조)
- 나. 조항 이동으로 조문 체계 정비(안 제2조의2부터 제2조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 다. 명칭의 통일을 통해 조직 운영의 체계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약 개정(안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 추가(안 제5조)
- 마. 이해를 돕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조문의 문장 구조 삭제 및 정비(안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
- 바. 임원 직책의 표기 순서를 '회장, 사무총장, 감사'로 조정 및 추가(안 제4조, 제5조)
- 사. 포상 수여에 대한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및 일관성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약 개정 및 신설(안 16조,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3.)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7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제10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u>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u>	<u>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u>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 16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u>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 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 16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u>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 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회원의 권리) (생략)	제2조의3(회원의 권리) (현행 제2조의2와 같음)
제2조의3(회원의 의무) (생략)	제2조의4(회원의 의무) (현행 제2조의3과 같음)
제3조(구성) 협의회는 “ <u>별표</u> ”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u>별표1</u> 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p>제4조(임원 및 조직) ① (생략) ② <u>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u> ③ ~ ④ (생략)</p>	<p>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u>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직전 회장과 광역지방정부의 장이 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② <u>삭제</u></p>	<p>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사무총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인 광역지방정부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기는 지방정부의 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u></p>
<p>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u></p>	<p>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u></p>
<p>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회원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생략) ② 실무협의회는 <u>협의체 소속 자치단체</u>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u>회장소속 자치단체</u>에서 주관한다.</p> <p>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u>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u></p>	<p>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실무협의회는 <u>협의회 소속 지방정부</u>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u>회장소속 지방정부와 협의회 사무국</u>에서 주관한다.</p> <p>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u>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u>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u>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u>참여자치단체는 매년</u>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u>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u>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u>지자체들이</u>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p> <p>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회 및 <u>실무진회의</u>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 5. (생략) 협의회 <u>회원도시</u> 교류 및 지원사업 (생략) <u>사무국 별도 설치에 따른</u> 인건비 및 운영비 	<p>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u>회원이 협의하여</u>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u>회원은 매년</u>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u>결정된 부담금을 사무국에 납부</u>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u>지방정부들이</u>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회 및 <u>실무협의회</u>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 5. (현행과 같음) 협의회 <u>회원 지방정부</u> 교류 및 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u>사무국의</u> 인건비 및 운영비

<p>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②(생략)</p> <p>③ 감사 <u>지자체</u>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p> <p>④ <u>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집행한다.</u></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을 별도 설치 할 때에는, 부담금 예산을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p>	<p>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감사 <u>지방정부</u>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p> <p>④ <u>협의회 부담금 예산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사무국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한다.</u></p>
<p>제14조(규약개정) (생략)</p>	<p>제18조(규약개정) (현행과 같음)</p>
<p>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u>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u> 회장이 정한다.</p>	<p>제19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u>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u></p>
<p>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u>단체</u>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p> <p>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u>단체</u>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p> <p>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u>단체</u>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p>	<p>제2조의2(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u>지방정부(이하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u>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p> <p>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u>지방정부</u>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p> <p>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u>지방정부</u>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p>

<p>제17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u>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모든 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 운영방안(방침)으로 정한다.</p>	<p>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u>회원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모든 수당은 소속 지방정부가 부담한다.</p> <p>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u>별표2와 같고,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34조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기준으로 매년 협의회장이 결정한다.</u></p>
<p>제18조(사무국의 업무) (생략)</p> <p>1. 총회, <u>실무진회의</u>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p> <p>2. ~ 4. (생략)</p> <p>5. 기타 총회 및 <u>실무진회의</u>에서 위임한 사항</p>	<p>제15조(사무국의 업무) (현행과 같음)</p> <p>1. 총회, <u>실무협의회</u>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p> <p>2. ~ 4. (현행과 같음)</p> <p>5. 기타 총회 및 <u>실무협의회</u>에서 위임한 사항</p>
<p>제19조(포상)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u>임시총회</u> 혹은 <u>정기총회</u>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p>	<p>제16조(포상)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u>공적심사위원회</u>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협의회 회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회장 및 회원으로 한다.</p>

	<p>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별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p> <table border="1" data-bbox="181 788 783 875"> <tr> <td data-bbox="181 788 272 875">지역</td> <td data-bbox="272 788 783 875">지방자치단체명</td> </tr> </table>	지역	지방자치단체명	<p>[별표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p> <table border="1" data-bbox="815 788 1426 875"> <tr> <td data-bbox="815 788 906 875">지역</td> <td data-bbox="906 788 1426 875">지방정부명</td> </tr> </table>	지역	지방정부명
지역	지방자치단체명				
지역	지방정부명				
<p><신 설></p>	<p>[별표2]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조직도</p>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2015. 09. 14. 제정
2016. 11. 16. 개정
2017. 11. 03. 개정
2018. 09. 13. 개정
2019. 09. 24. 개정
2021. 07. 01. 개정
2021. 11. 02. 개정
2022. 04. 11. 개정
2023. 12. 14. 개정
2025. 8.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2., 2025. 8. 1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
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조의2(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이하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개정 2025. 8. 13.>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정부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정부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개정 2025. 8. 13.>

[제16조에서 이동 2025. 8. 13.]

제2조의3(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의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의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3. 12. 14.>

② 회원은 협의회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3. 12. 14.>

[제2조2항에서 이동 2025. 8. 13.]

제2조의4(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신설 2023. 12. 14.>

1. 협의회 규약 및 모든 규정의 준수 <신설 2023. 12. 14.>

2. 총회 등의 결의사항 이행 <신설 2023. 12. 14.>

3. 부담금의 납부 <신설 2023. 12. 14.>

[제2조3항에서 이동 2025. 8. 13.]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9. 24., 2025. 8. 13.>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

② 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직전 회장과 광역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개정 2021. 11. 2., 2025. 8. 13.>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3.>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다. <개정 2021. 7. 1.>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사무총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인 광역지방정부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14., 2025. 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기는 지방정부의 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8. 13.>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회장이 된다. <개정 2017. 11. 3.>

② 협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 11. 3.>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개정 2023. 12. 14.>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회원 지방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지방정부와 협의회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5. 8. 13.>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이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은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 이라 함은 회원 지방정부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2025. 8. 13.>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3.>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8. 13.>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9. 9. 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9. 9. 24.>

6. 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교류 및 지원사업 <신설 2019. 9. 24.><개정 2025. 8. 13.>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신설 2019. 9. 24.>

8.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 <신설 2021. 7. 1.><개정 2025. 8. 13.>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

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3.>

③ 감사 지방정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 11. 3.><개정 2025. 8. 13.>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사무국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한다. <개정 2023. 12. 14., 2025. 8. 13.>

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회원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개정 2025. 8. 13.>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 7. 1.>

③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모든 수당은 소속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개정 2023. 12. 14., 2025. 8. 13.>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2와 같고,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기준으로 매년 협의회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1. 7. 1.><개정 2025. 8. 13.>

[제17조에서 이동 2025. 8. 13.]

제15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14.>

1. 총회, 실무협의회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개정 2023. 12. 14., 개정 2025. 8. 13.>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개정 2023. 12. 14.>

3.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개정 2023. 12. 14.>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개정 2023. 12. 14.>

5. 기타 총회 및 실무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정 2023. 12. 14., 2025.

8. 13.>

[제18조에서 이동 2025. 8. 13.]

제16조(포상)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9.><개정 2025. 8. 13.>

[제19조에서 이동 2025. 8. 13.]

제1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협의회 회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 8.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8. 13.>

③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회장 및 회원으로 한다.<신설 2025. 8. 1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25. 8. 13.>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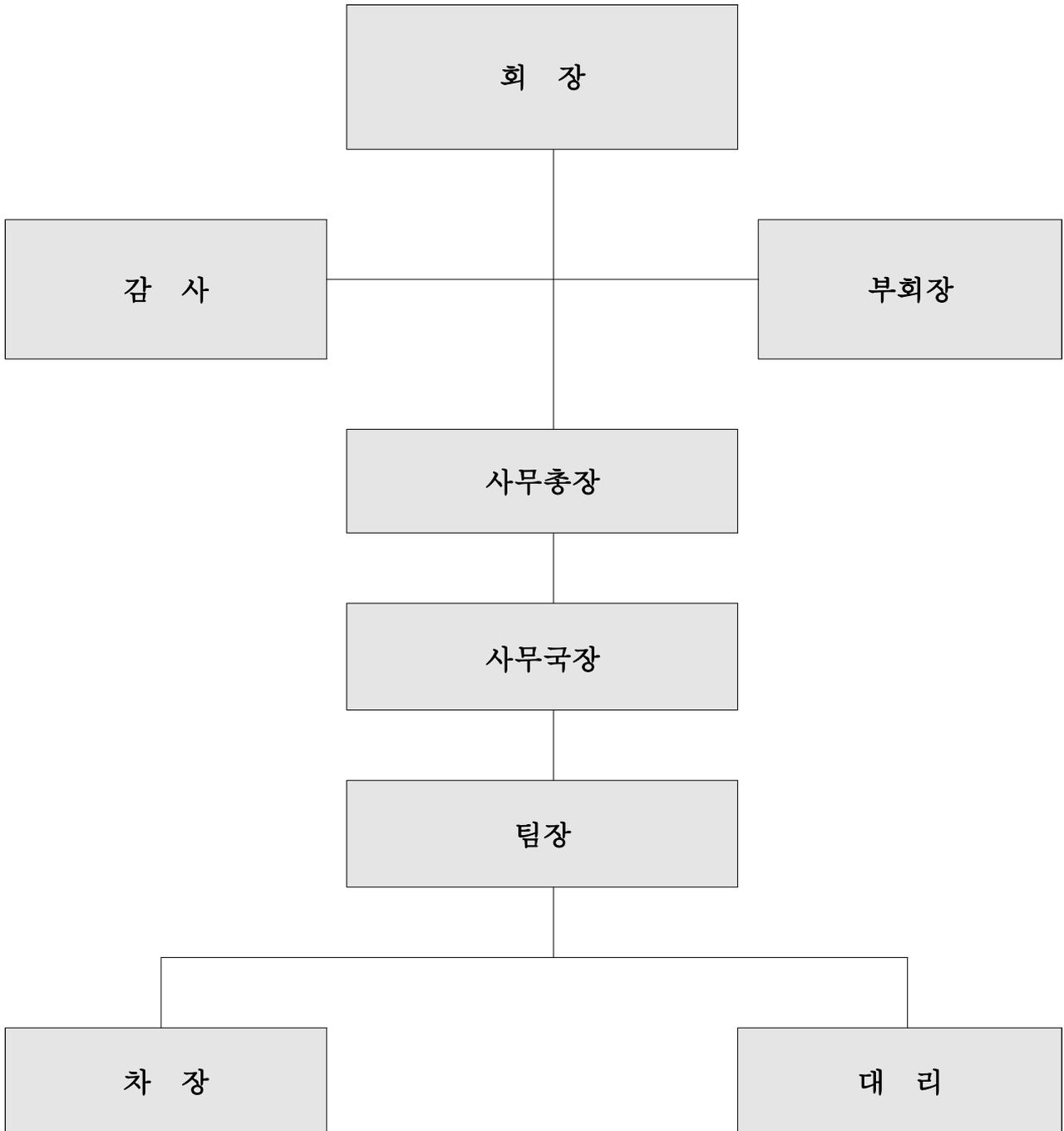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5. 8. 13.>

[제15조에서 이동 2025. 8. 13.]

[별첨 1] 유니세프 이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2026.1월)

지역	회원 지방정부
서울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중랑구
부산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인천 (3)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 (6)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대구 (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 (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1)	북구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7)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경기 (16)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양주시
강원 (4)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충남 (8)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 (7)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고흥군, 해남군
경북 (5)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김천시
경남 (4)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고성군

[별첨 2] 유니세프이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조직도



[별첨 3]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별첨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규약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원의 권리·의무 등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일부 개정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규약 일부 개정으로 별도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병 철